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 12. 7.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11월 23일, 이필레 의원 외 11명
- 나. 회부일자 : 2017년 11월 24일
- 다. 상정일자 : 제216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건설위원회(2017년 12월 7일)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이동주 의원

가. 제안이유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교육, 판매촉진, 마케팅 등의 각종 지원방안 마련을 통해 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 촉진과 성장기반 조성을 통해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 소상공인 실태조사(안 제5조)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창업 지원 사업 및 특별보증 지원
(안 제6조 ~ 제7조)
- 소상공인 관련단체 설립 권장 지원(안 제8조)

3. 검토보고 (전문위원 유준상)

○ 본 조례안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교육, 판매촉진, 마케팅 등의 각종 지원방안 마련을 통해 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 촉진과 성장기반 조성을 통해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의견으로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원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며, 체계적인 빅데이터 정보를 확보·활용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경영에 필요한 교육 및 정보 제공이 필요함.

또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하락이 우려되는 만큼 기금을 잘 활용하여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 보증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명시하고 마포구 소상공인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